

자가운전제 취급세칙

제 정 : 1989. 3. 1. 1차개정 : 1990. 3.21. 2차개정 : 1992. 9. 9.
3차개정 : 1993. 3. 6. 4차개정 : 1994. 6.17. 5차개정 : 1998. 7. 9.
6차개정 : 1999. 8.27. 7차개정 : 2001. 4.30. 8차개정 : 2002. 2. 1.
9차개정 : 2004. 1.28. 10차개정 : 2009. 1.23. 11차개정 : 2009.10.21.
12차개정 : 2010. 4.28. 13차개정 : 2014. 6.27. 14차개정 : 2018. 5.29.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자가운전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자가운전이라 함은 자가운전자가 본인,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 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·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.

제3조(대상자)

자가운전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임직원으로 한다.

1. 이 사
2. 본부장
3. 단장, 소장, 부서장, 부서내실장 및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직원
4. 팀장 및 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직원

제4조(차량유지비 지급신청)

자가운전자는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유지비 지급담당부서장 앞 신청한다. 단, 차량 소유주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를 첨부한다.

1. 운전면허증 사본 1부
2.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
3. 자동차종합보험증권 사본 1부

제5조(차량유지비 지급)

① 자가운전 대상자별 차량유지비는 다음과 같다. 단, 업무용차량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.

구 분	월 지급액	지급비목
이 사	500,000원	경 비 (복리비)
본 부 장	400,000원	
단장, 소장, 부서장, 부서내실장 및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직원	200,000원	
팀장 및 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직원	50,000원	

② 차량유지비의 지급은 월별로 자가운전자의 영수증에 의거 선급할 수 있다. 다만, 월중 휴가출장 등의 합산기간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를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입 또는 익월 지급분에서 감액지급한다.

③ 자가운전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자가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3개월분을 일시 선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행당월분은 자가운전 시행일에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종합보험가입 의무)

자가운전자는 차량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

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차량유지비 지급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제정)

- ① (시행일) 이 요강은 1989. 3. 1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요강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- ③ (폐지내규) 이 요강의 시행과 동시에 자가운전제 취급요령은 폐지한다.

부 칙 (1)

이 요강은 1990. 4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이 요강은 1992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3)

이 요강은 1993. 3. 6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4)

이 요강은 1994. 7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5)

이 요강은 1998. 7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6)

이 요강은 1999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이 요강은 2001. 4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이 요강은 2002. 2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이 요강은 2004. 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0)

이 요강은 2009. 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1)

이 세칙은 2009. 10. 19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2)

이 세칙은 2010. 5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3)

이 세칙은 2014. 1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4)

이 세칙은 2018. 5. 29. 부터 시행한다.